

교 직 원 보 수 규 정

(제정 1985. 3. 2.)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신동아학원정관 제49조와 제86조에 따라 전주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전임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전임 교직원(이하 “교직원” 이라 한다)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기본급(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10.26>
2. “기본급(봉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10.10.26>
3. “보수의 일할 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기타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전임 교직원”이란 학교법인신동아학원정관 제6장에 따라 임용되는 교직원을 말한다.

제 2 장 보 수

제4조(보수의 책정) 교직원의 보수는 물가인상률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및 타 대학 보수 수준을 참고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직원의 보수) ① 교직원의 보수는 각각 당해 인사규정이 정하는 직급 및 호봉에 따라 매년 총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는 교직원 보수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비정년 계약임용직교원의 보수는 ” 비정년계열 계약임용직교원 보수지급 규정 “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그 밖에 교직원의 보수를 별도로 책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총장은 보수금액과 지급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초임호봉 확정) ① 교직원의 초임호봉은 교직원 보수지급 기준표에 따른 호봉으로 하되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는 교원인사규정 또는 직원인사규정에서 정하는 경력연수 환산율표에 따른 경력연수를 합산하여 확정한 호봉으로 한다.

② 직원의 신규 임용시 대학 졸업자를 7급 이상, 전문대학 졸업자를 8급 이상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전 학업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7조(승급 및 제한) ① 교직원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휴직 및 직위해제 등 인사

규정에서 정하는 제한기간은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교직원의 승급은 매월 1일자로 한다.

③ 교원의 승급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해당연도 호봉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전임 교직원 이외자의 보수) 전임 교직원 이외자의 보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 장 보 수 지 급

제9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수지급일)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7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1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임용 일자를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삭 제)

③ (삭 제)

제12조(보수의 감액) 교직원복무규정이 정하는 휴가를 제외한 결근일수가 해당 교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 1일에 대하여 보수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결근이란 유계결근만을 의미한다.

제13조(잔무처리기간 중의 보수) 면직된 교직원이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면직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겸직보수) 교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 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

제15조(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중의 보수) 휴직, 직위해제, 징계처분 기간 중의 보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교직원의 보수) ① 교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 승급일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 처분(또는 휴직 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

과 그 직위해제 처분기간(휴직처분 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 4 장 상여 및 정근수당

제17조(상여수당) ① 교직원에게 매년 정하는 교직원 보수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 지급일에 상여수당을 지급하되, 교원의 상여수당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차등지급 할 수 있다.

② 상여수당은 제11조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8조(정근수당) ① 교직원에게 매년 정하는 교직원 보수지급 기준에 의거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 지급일에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해당월 1일 현재 교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기본급이 지급되는 사람(기본급의 일부가 계속 지급되는 사람 포함)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10.26>

제 5 장 수 당

제19조(장기근속수당) 교직원에게 교직원 보수지급 기준에 의거 근속연수에 따라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제20조(연구보조비) ① 교원에 대하여는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연구보조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업무수당) ① 교직원에 대하여 직종 및 직무특성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업무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직책수당) ① 보직 임용한 교직원에 대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보직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중 많은 금액의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책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매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제수당) ① 교직원에 대하여 매년 예산범위 안에서 정하는 교직원보수지급기준에 의하여 기본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26>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 범위, 지급액, 그 밖의 수당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매년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4조(퇴직금) 교직원 퇴직금의 지급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준용한다.

제25조(준용) (삭 제)

부 칙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2-12-4 교직원보수규정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업경력 호봉 획정에 대한 경과조치)

1.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직원 인사규정에 의하여 인정한 본교 임용전 학업경력이 있는 자의 호봉 산정은 제6조 제2항을 준용한다.
2.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직원인사규정에 의하여 학업경력을 합산할 자 중 대졸자가 8급으로 신규 임용된 경우 학업경력은 2년만 합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7조제3항(승급및제한) 및 제17조(상여수당)의 적용은 교원업적평가규정의 업적급제 시행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